

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기 체결 FTA 협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in Agriculture Sector

- Focused on FTA Agreements -

박현희(Hyun Hee Park)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주저자)

조성제(Sung Je Cho)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 | V. 요약 및 결론 |
| II. FTA 협정상 원산지기준 | 참고문헌 |
| III. 발효 중인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 Abstract |
| IV. FTA 협정별 농산물 원산지기준 비교 | |

국문초록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써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 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원산지, 원산지 기준, FTA, 농산물 원산지기준

I. 서론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무역자유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장개방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 교역확대를 위해서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세계 각국들의 노력은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 무역체제 논의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미국 등 일부국가들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 통상으로 최근 들어 정책적 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경제에서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통상협력 질서인 FTA 협정은 안정적인 해외시장확보와 대외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과 EU 그리고 ASEAN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지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경제지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FTA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부문은 농업이다. 농업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국마다 농업의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 확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의 시장보호능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협정체결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정체결 전략이 필요하다.

FTA 협정에서 원산지란 협정 체결국가 또는 지역 간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역내국간에 생산되고, 수출입업자간 교역이 발생하며 직접운송원칙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 기준은 교역되는 물품을 역내산과 역외산으로 구분하여 관세상의 차등대우를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원산지 기준에 대한 농업부문의 이해와 분석은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체결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명확한 기준설정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상의 새로운 전략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FTA 체결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체결된 우리나라의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원산지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기체결 협정별 원산지 기준의 차이점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FTA 협정상 원산지기준

1. 원산지의 개요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 및 운송·물류의 발달로 글로벌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과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은 복잡해지고, 국가 간 협상의 쟁점이 될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원산지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작용하지만, 원산지제도가 다른 무역정책들과 결합하게 되면 보다 강력한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로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협상이나 양자간 협상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되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며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즉, 원재료를 공급한 국가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자본을 투자한 국가, 디자인을 한 국가, 기술을 제공한 국가나 상표를 소유한 국가 등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법령이나, 제도, 행정규칙을 의미하며,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되어진다.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수혜국을 정확하게 식별함으로써 비수혜국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방지하고 특혜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FTA의 원산지규정은 FTA 특혜관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비특혜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법규로 원산지가 규정화된 것은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정(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이 최초이며¹⁾, 1947년 제정된 GATT 규정 제9조에는 “원산지 표시(Marks of Origin)”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1964년 UN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UNCTAD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특

1) 이영달 편저, 『원산지 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1.

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73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제정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에서도 부속서 D1, D2, D3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증명서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²⁾, 1995년 출범한 WTO에서도 원산지규정이 무역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을 마련하였고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협력하여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위한 다자간협상을 진행 중이다.

2. FTA 협정에서 원산지기준

FTA 협정상 원산지기준에 의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FTA 협정을 체결한 역내국가에서 생산되어 역내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업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관세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을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규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산 상품과 역외산 상품을 구별하여 관세상 차등 대우하는 기준이 된다.

FTA 협정에 의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산지규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FTA 협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역외국 상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역내산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인하조치를 취함으로써 원산지기준은 역내국간에는 교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고 역외국에게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FTA 협정에서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될 때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품),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 생산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될 때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불완전생산품)기준으로 구분된다.³⁾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은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물품이 원산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의미

2) 권오,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2호, 2005.

3) 이 절의 내용은 박현희, “한국의 기계적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2.4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에서 농산물은 종자에서부터 원산지물품이어야 하고, 공산품의 경우는 부품 또는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다른 나라 재료 또는 원산지불명 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원산지로 인정된다.

즉 당해물품의 전부를 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완전생산기준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역외국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어 질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역내국 선박으로 역외(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은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되어 진다.

완전생산기준은 산업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천연산품·광산물·농수산물에 많고 공산품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2)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ly transformation)은 2개국 이상에서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당해물품의 전부를 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과 비교하여 불완전생산품이라고도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가공·생산한 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나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불완전생산품의 실질적 변형 판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주요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표 1> 참조).

<표 1> 실질적 변형기준의 구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 류변경(HS 2단위) CC(Change of Chapter) - 호변경(HS 4단위) CH(Change of Tariff Heading) - 소호변경(HS 6단위) CS(Change of Tariff Subheading)	- RC법(Regional Contents) · 공제법(Build-down Method) · 집적법(Build-up Method) · 순원가법(Net Cost Method) - MC법(iMport Contents)	재단·봉제 또는 염색 · 날염, 화학반응 기준

자료 : FTA 협정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3)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은 불완전생산품 또는 실질적 변형기준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한 종류로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

료의 세번⁴⁾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HS 품목분류체계는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므로 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장점은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세번) 변경 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원산지결정이 신속·정확하고 객관적이나 HS 품목분류 체계상 상당히 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2단위 변경(CC : Change of Chapter), HS 4단위 변경(CH : Change of Tariff Heading), HS 6단위 변경(CS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이 가장 엄격한 원산지기준이고 다음으로는 4단위 변경, 6단위 변경이 완화된 원산지기준이라 할 수 있다.

4)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VAC : Value Added Criterion)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라 함은 각국의 품목별 경쟁력을 기초로 정해지게 되며,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비율을 낮게 정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비율을 높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산지기준으로서 부가가치기준은 결정기준이 간단·명료하여 협상과 운용이 간편하나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계산이 복잡하며, 원가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등 원산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RC(Regional Contents) 법과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MC(Imports Contents)법이 있으며, RC 법에는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이 있다(<표 2> 참조).

공제법(Build-down Method)은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으로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유리하다. 공제법은 한·칠레, 한·ASEAN, 한·미 FTA 및 한·인도 CEPA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상품가격은 한·칠레, 한·미 FTA에서는 조정가격을 한·ASEAN, 한·인도 CEPA에서는 본선인도가격(FOB)을 사용한다.

4) 세번(稅番, tariff classification)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특정품목에 부여된 품목번호를 말한다.

〈표 2〉 부가가치기준의 결정 산식

	결정기준	특징(협정별 상품가격)
공제법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	○ 한·칠레 : 조정가격 ○ 한·ASEAN : FOB ○ 한·미 : 조정가격 ○ 한·인도 : FOB
집적법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	○ 한·칠레 : 조정가격 ○ 한·ASEAN : FOB ○ 한·미 : 조정가격
순원가법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	○ 한·미 : 순원가
MC법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	○ 한·EFTA : EXW ○ 한·EU : EXW

자료 : FTA 협정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집적법(Build-up Method)은 생산자가 상품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으로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집적법은 한·칠레, 한·ASEAN 및 한·미 FTA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한·칠레, 한·미 FTA에서 상품가격은 조정가격을 한·ASEAN FTA에서 상품가격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사용한다.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은 공제법의 일종으로, 공제법은 상품가격을 수출국에서 출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순원가법은 그 가격에서 판매비용 등 일정비용(관측·마케팅·판매후 서비스·로열티·운송·포장 관련 비용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한다는 점만 다르다. 순원가법은 한·미 FTA에서만 사용하는 부가가치비율 계산방식이며, 상품가격은 순원가를 사용한다.

MC법(iMport Contents)은 ‘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MC법은 한·EFTA와 한·EU FTA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상품가격은 공장인도가격(EXW)을 사용한다.

5) 주요공정기준

주요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은 불완전생산품 또는 실질적 변형기준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

에서 수행할 때 원산지로 인정되며,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다.

주요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적용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으로, 특정공정 수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객관성은 확보되지만 생산공정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Ⅲ. 발효 중인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1. 발효 중인 FTA 협상현황

한국은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인 수혜국으로 무역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국가로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발전을 해 온 국가이다. 최근의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주의 경향은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통상환경하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전략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표 3〉 발효 중인 한국의 FTA 현황(2011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협정체결국(발효일)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칠레(2004년 4월 1일)	2,381 (0.43)	4,858 (0.93)	7,239 (0.67)
싱가포르(2006년 3월 2일)	1,368 (0.25)	1,950 (0.37)	3,318 (0.31)
EFTA(2006년 9월 1일)	1,818 (0.33)	5,177 (0.99)	6,995 (0.65)
ASEAN(2007년 6월 1일)주1)	71,801 (12.93)	53,121 (10.13)	124,922 (11.57)
인도(2010년 1월 1일)	12,654 (2.28)	7,894 (1.51)	20,548 (1.90)
EU(2011년 7월 1일)	55,727 (10.04)	47,424 (9.04)	103,150 (9.55)
페루(2011년 8월 1일)	1,368 (0.25)	1,950 (0.37)	3,318 (0.31)
미국(2012년 3월 15일)	56,208 (10.12)	44,569 (8.50)	100,777 (9.33)
발효국 전체	203,325 (36.62)	166,943 (31.83)	370,268 (34.30)
한국의 전체	555,214 (100.00)	524,413 (100.00)	1,079,627(100.00)

주1) : ASEAN은 상품부문 발효일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www.ecos.bok.or.kr

그 결과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한-EFTA FTA(2006년 9월), 한-ASEAN FTA(2007년 6월, 상품기준), 한-인도 CEPA(2010년 1월), 한-EU FTA(2011년 7월), 한-페루 FTA(2011년 8월), 한-미 FTA(2012년 3월)까지 8개의 FTA 협정을 45개국과 체결하여 현재 발효 중이다.

<표 3>에는 발효 중인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이 정리되어 있으며, 2011년 기준 발효국 전체에 대한 수출은 2,033억 달러이고 수입은 1,669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62%이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83%이다.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은 3,703억 달러로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3%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45개국으로 우리가 교역하는 200여 개국의 22.5%에 불과하지만 교역액은 34.3%로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교역이 진행 중인 국가들과 FTA가 체결 되어 발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FTA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 국가와의 교역현황을 보기 위하여 협상 타결후 발효된 해를 시작으로 상대국과의 교역액 추이를 <표 4>에 정리하였다. 협정이 발효된 이후 7년차가 되는 칠레의 경우 매년 수출액과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체결직전년도에 비해 7년차가 되는 2011년의 수출은 4.6배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4.6배 증가하였다.

<표 4> FTA 발효 이후 상대국과의 교역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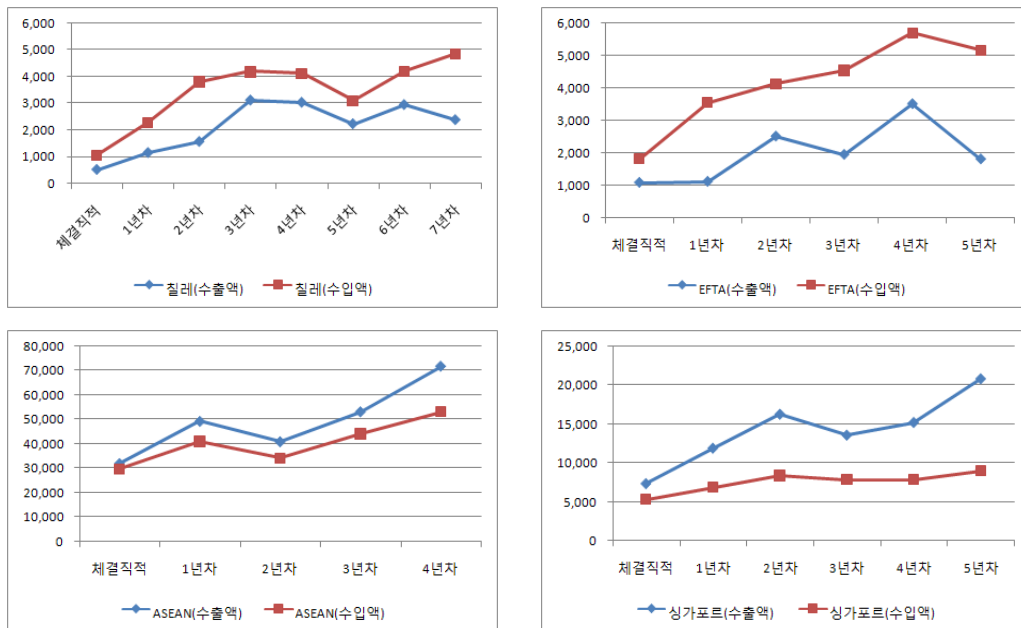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체결직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칠레	수출액	517	1,151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수입액	1,058	2,279	3,813	4,184	4,127	3,103	4,221	4,858
싱가포르	수출액	7,407	11,949	16,293	13,617	15,244	20,839		
	수입액	5,318	6,860	8,362	7,872	7,850	8,967		
EFTA	수출액	1,090	1,123	2,521	1,956	3,522	1,818		
	수입액	1,818	3,554	4,138	4,548	5,699	5,177		
ASEAN	수출액	32,066	49,283	40,979	53,195	71,801			
	수입액	29,743	40,917	34,053	44,099	53,121			
인도	수출액	8,013	12,654						
	수입액	4,142	7,894						

주 : 발효된 다음연도를 1년차로 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www.ecos.bok.or.kr

5년차가 되는 싱가포르도 체결직전년도 대비 수출은 2.8배, 수입액은 1.7배 증가하였고, EFTA와의 수출도 1.7배, 수입은 2.8배 증가하여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정 발효 직전년도부터 2011년까지 FTA 체결국별 교역현황을 <그림 1>에 그래프로 정리하였으며, 대부분의 협정체결국과의 교역액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FTA 발효 이후 상대국과의 교역액

3. FTA 상대국과의 농산물 교역현황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동향은 <표 5>에 정리되어 있으며, 2011년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76.9억 달러로 2006년 33.9억 달러에 비하여 126.6% 증가하였다. 특히 농산물의 수출은 2006년 20.1억 달러에서 2011년 49.4억 달러로 145.8% 증가하여 전체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입동향은 <표 6>에 정리되어 있으며, 2011년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입액은 331.8억 달러로 2006년 161억 달러 대비 106.1% 증가하였다. 농산물의 수입은 2006년 8.1억 달러에서 2011년 18.4억 달러로 126.2% 증가하여 전체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입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림수산물	3,394.8	3,759.3	4,496.5	4,809.3	5,880.0	7,691.3
○ 농식품	2,304.4	2,531.8	3,048.2	3,298.1	4,081.9	5,383.5
- 농산물	2,008.2	2,222.5	2,714.7	2,990.8	3,721.7	4,940.8
- 축산물	172.2	181.0	215.1	139.6	146.1	176.3
- 임산물	124.0	128.3	118.5	167.7	214.1	266.4
○ 수산물	1,090.4	1,227.5	1,448.3	1,511.2	1,798.2	2,307.8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1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2.3.

전체 농림수산식품의 2006년 대비 2011년의 증가율은 수출은 126.6%, 수입은 106.1%로 수입보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림수산물	16,100.9	19,242.3	23,198.6	21,240.9	25,787.2	33,184.0
○ 농식품	13,327.3	16,182.5	20,120.4	18,346.5	22,329.9	28,994.1
- 농산물	8,117.2	10,089.0	13,904.6	11,753.6	13,987.8	18,362.0
- 축산물	2,748.5	3,235.3	3,352.2	2,485.1	3,123.0	5,071.4
- 임산물	2,461.6	2,858.2	2,863.6	4,107.8	5,219.1	5,560.7
○ 수산물	2,773.6	3,059.8	3,078.3	2,894.4	3,457.3	4,189.9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1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2.3.

<표 7>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이 정리되어 있으며 2011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76.9억 달러로 2006년 33.9억 달러에 비해 126.6%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시장 수출은 23.7억 달러(2011년)로 2006년 13.1억 달러에 비해 81.1% 증가하였고 중국시장 수출은 2011년 13.8억 달러로 2006년 3.4억 달러에 비해 311.2%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 중인 미국으로의 2011년 수출은 6억 달러로 2006년 3.8억 달러 대비 58.7% 증가하였으며, ASEAN으로의 수출은 2011년 10.3억 달러로 2006년 2.7억 달러에 비해 286.6% 증가하였고, EU에 대한 2011년 수출은 3.6억 달러로 2006년 1.1억 달러에 비해 240.2% 증가하여 FTA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의 수출증가율이 미체결국과의 수출증가율과 전체 수출증가율(126.6%)에 비하여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농림수산물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394.8	3,759.3	4,496.5	4,809.3	5,880.0	7,691.3
일본	1,311.0	1,219.6	1,438.4	1,580.4	1,882.6	2,374.2
중국	335.6	452.1	539.4	565.2	787.4	1,380.0
미국	378.1	400.9	449.2	467.3	518.8	599.8
러시아	215.5	250.6	293.4	226.3	235.7	242.7
홍콩	158.7	153.7	172.3	196.2	243.7	305.5
대만	110.4	120.8	125.7	154.8	211.3	261.0
ASEAN	267.0	343.8	451.3	521.1	719.8	1,031.9
EU	106.1	162.2	245.6	259.1	332.7	362.9
기타	512.4	655.6	781.1	838.8	948.0	1,133.2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1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2.3

<표 8>에는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국가별 수입동향이 정리되어 있으며 2011년 농림수산물 수입은 331.8억 달러이며 2006년 수입 161억 달러에 비해 106.1%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257.9억 달러에 비해 74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식품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1년 수입은 77.1억 달러이며 2006년 수입은 29.8억 달러에 비해 158.9%나 증가하여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농림수산물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6,100.9	19,242.3	23,198.6	21,240.9	25,787.2	33,184.0
미국	2,976.8	3,698.8	6,401.0	4,590.9	5,959.7	7,706.2
중국	3,236.1	4,173.4	3,627.1	3,676.0	4,323.2	5,249.7
호주	1,658.3	1,694.5	1,920.9	1,703.1	2,212.7	2,820.1
캐나다	493.4	536.4	587.0	749.1	1,062.8	1,709.5
브라질	605.8	828.9	950.6	1,471.1	1,518.4	1,618.8
뉴질랜드	715.7	828.9	863.6	658.9	845.9	1,061.3
러시아	541.5	613.8	534.0	616.8	738.5	914.0
ASEAN	2,003.3	2,375.2	3,111.6	2,758.1	3,422.5	4,455.8
EU	1,677.3	1,980.2	2,041.9	1,713.1	1,955.8	2,771.9
기타	2,192.7	2,512.2	3,160.8	3,303.7	3,747.8	4,876.7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1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2.3.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인 ASEAN으로부터의 2011년 수입액은 44.6억 달러로 2006년 수입액 20억 달러에 비해 122.4% 증가하였으며, EU로부터의 2011년 수입은 27.7억 달러로 2006년 수입액 16.8억 달러에 비해 65.3% 증가하여 FTA 협정 발효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평균 수입증가율(106.1%)과 비교해 볼 때 ASEAN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큰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증가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V. FTA 협정별 농산물 원산지기준 비교

최근 확산되는 지역주의 추세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협정체결국간 관세상의 혜택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상대국과 체결한 협정문을 중심으로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가 인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체결할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발효 중인 FTA 협정은 8개의 협정으로 45개국에서 발효되고 있으나 농림수산물 수출 10대국과 수입 10대국에 해당되는 미국, ASEAN, EU 및 최초로 협정이 발효된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의 원산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협정별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체결 FTA 협정별 농산물의 원산지 결정 기준

1) 한·칠레 FTA 협정

한·칠레 FTA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에 정의된 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되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는 부속서(<표 9> 참조)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된다.

완전생산기준은 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②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③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렵, 딛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④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 ⑤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④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생산된 상품, ⑥ 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등이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된다.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칠레 FTA에서 농산물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번변경에서도 가장 엄격한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방식이 대부분이고, 몇몇 품목에 한해 4단위 변경(CH; Change of Tariff Heading)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비율 산정시 공제법은 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 직접법은 30%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되고 있다.

<표 9> 한·칠레 FTA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구분	품목	내용
제1류	01.01-10.06	산동물
제2류	02.01-02.10	육과 식용설육
제3류	03.01-03.06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제4류	04.01-04.10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5류	05.01-05.11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6류	06.01-06.04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제7류	07.01-07.14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제8류	08.01-08.14	식용의 과일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9류	09.01-09.10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제10류	10.01-10.08	곡물
제11류	11.01-11.09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12.01-12.14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

구분		품목	내용
		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집과 사료용 식품	
제13류	13.01-13.02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3.01 내지 13.02로의 변경 (단 2939.11의 양귀비 줄기 농축물은 제외)
제14류	14.01-14.0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4.01 내지 14.04로의 변경
제15류	15.01-15.22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5.01 내지 15.22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제16류	16.01-16.05	육류·어류·갑각류·연체 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6.01 내지 16.05로의 변경
제17류	17.01-17.03 17.04	당류와 설탕과자	·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7.01 내지 17.03으로의 변경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7.04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제18류	18.01-18.02 18.03-18.05 18.0-06	코코아와 그 조제품	·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8.01 내지 18.02로의 변경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8.06 내지 18.05로의 변경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8.06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제19류	19.01-19.05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9.01 내지 19.05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제20류	2001.10-2008.91 2008.92-2008.99 2009.11-2009.80 2009.90	제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001.10내지 2008.91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80% 이상인 경우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009.11내지 2009.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80% 이상인 경우
제21류	21.01-21.06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1.01 내지 21.06으로의 변경
제22류	22.01 22.02-22.09	음료·알코올 및 식초	·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2.01로의 변경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2.02 내지 22.0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제23류	23.01-23.08 23.09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3.01 내지 23.08로의 변경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3.0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제24류	24.01 24.02-24.03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	·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4.01로의 변경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4.02 내지 24.03으로의 변경

자료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부속서 4를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2) 한·미 FTA 협정

한·미 FTA 협정상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일반원칙에는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이 부속서에는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하여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였다.

한·미 FTA 협정에서 ①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②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③ 양국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④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⑤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⑥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자원, ⑦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계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등이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한다.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표 10>과 같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도축기준과 관련해서는 위생검역(SPS),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내용은 각국이 국내법령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완전생산기준은 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born and raised)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부여하나 도축기준은 양국에서 도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생육여부를 불문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미 FTA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하여는 미국과 한국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부가가치기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주요공정기준은 화학반응, 정제, 블렌딩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표 10> 한·미 FTA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대상품목	원산지 기준
쌀·인삼 및 관련 제품	역내산 재료 사용
쇠고기, 돼지고기	도축기준
닭고기	완전생산기준
설탕	역내산 조당 사용
소주, 청주	역외산 주정 사용 허용
담배	역내산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조건하에 예외적인 쿼터 부여

자료 :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07.5, p.78.

3) 한·ASEAN FTA 협정

한·ASEAN FTA 협정에서는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요건은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이나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는 않았어도 원산지 자격이 있는 상품은 원산지로 인정한다.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은 ①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채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②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③ ②의 규정에 의해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④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 딛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⑤ 당사국 영역 내에서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① 내지 ④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⑥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계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된 다른 어로 상품, ⑦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계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 ⑧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계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서 ⑦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이 농산물 원산지관련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된다.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불완전상품의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40% 미만인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며, 품목별원산지 기준을 정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는 상품은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한·ASEAN FTA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농산물 원산지판정기준은 <표 1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1> 한·ASEAN FTA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내용	품목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류 산동물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의 종자와 과일,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집과 사료용 식물

내용	품목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또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8류 식용의 과일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차·마테 및 향신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해당.류에 해당하는 호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해당.류에 해당하는 호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 이상일 것	0305.59, 0305.69 / 04.02, 04.03, 0404.10, 0406.30 / 0901.12, 0901.21, 0901.22/20.06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일 것	0901.90, 0904.12, 0906.20, 0910.50, 0910.91, 0910.99 / 1102.90, 11.03~11.08 /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70% 이상일 것	1302.3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 이상일 것	1602.32/20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2402.2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자료 :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부속서 3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4) 한·EU FTA 협정

한·EU FTA 협상에서는 양측의 교역구조를 고려하여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의 해외조달비율 등 산업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수출면에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가공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예외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FTA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 협정문에는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이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서에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 아웃소싱 추세를 반영한 원산지판정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다.

한·EU FTA 협상의 원산지 일반규정에 의하며 완전생산기준은 ①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②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③ 양국영역에서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④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⑤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⑥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선박에 의한 어로행위로 획득된 상품과 다른 상품 및 배타적으로 동 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이 완전생산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이다. 완전생산기준 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혜원산지기준 이외에 미소기준,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 등이 규정되어 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그간 EU가 체결한 FTA에서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수정하였으며,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표 12>와 같다.

한·EU FTA 협상에서 쌀, 녹차, 인삼, 참기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등은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에 한해 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되며, 수산물도 역내에서 어획된 것만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된다.

농산물 중 라면, 국수에 대해서는 예외기준을 인정받았고, 비스킷에 대해서도 원산지기준 면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농산물의 수출이 용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가공품(16류)에 대해서 일반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에 합의하였고, 어묵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양식(aquaculture)의 경우에는 한국의 특성이 반영되어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표 12> 한·EU FTA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

대상품목	원산지 기준
쌀, 녹차, 인삼, 참기름 및 관련 제품	역내산(완전생산기준) 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완전생산기준)
수산물	역내에서 어획된 것(완전생산기준)
담배	역외산 재료는 30%까지 허용하되,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 확보

자료 :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p.91.

2. FTA 협정별 농산물 원산지기준 비교 및 시사점

한·칠레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2개국 이상이 관여한 생산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 중에서도 2단위 변경(CC)을 채택하고 있어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은 공제법의 경우에는 45% 이상, 직접법의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채소·과실·견과류의 일부품목은 공제법 사용시 80%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미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주로 완전생산기준이 인정되며 품목별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는 도축기준으로 정하고 양국에서 도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불완전생산품에 대하여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한·ASEAN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불완전생산품의 경우는 공제법과 직접법을 적용하며 상품가격은 FOB 가격의 40% 이상이거나 호변경(HS 4단위)이 일어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한다. 밀크와 크림(04.02), 가공치즈(0406.30), 커피(09.01)의 경우는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45%. 한천(1302.31)은 70%이상인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EU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수산물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어획된 것, 쌀·녹차·인삼·참기름 등은 역내산이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된다. EU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다른 국가와 체결된 FTA 협상에서의 원산지 기준보다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인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라면이나 국수와 같은 농산물중 가공식품 등은 예외기준으로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으로써 확보하였다.

한국이 체결하고 발효된 8개의 FTA 협상중 한·칠레, 한·미, 한·ASEAN, 한·EU FTA 협상에서 농산물 원산지 기준을 보면,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경우는 태어나고 자란 것만 원산지로 인정(한·EU FTA)한 협정도 있으나 생육여부를 불문하고 도축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한·미 FTA,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한 경우도 있다.

각협정별 원산지 기준은 협정 당사국이 경쟁력을 가질 만한 제품에서는 강력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는 극히 한정적이므로 가공식품에서 폭 넓게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비율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향후협정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FTA 추진을 통해 경제 지도를 확장한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 자원부국, 거점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FTA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FTA 협상추진 결과 8개의 FTA 협정이 45개국에 걸쳐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FTA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기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생산과 가공 그리고 포장 및 판매의 장소가 다른 물품에 대한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FTA 원산지 기준이란 FTA 체결을 통해 체결국가 또는 지역 간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역내국간에 생산되고, 역내국간 수출입업자간 교역이 발생하며 직접 운송원칙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 기준은 교역되는 물품을 역내산과 역외산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관세상의 차등대우를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결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별 차이도 있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원산지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원산지 규정은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화된 법·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산지협상과정에서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반영되거나 협상대상국간의 조정을 통해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FTA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FTA 협정의 경제적 효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FTA 협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문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FTA 협상의 효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2단위까지 세번변경을 적용하고, 일부 품목만 4단위 변경까지 허용하고 있어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외에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해서는 양국의 영역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으로 인정하고, 품목별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다른 FTA 협정과 다른 특이한 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에 대하여 생육기준이 아닌 도축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에서 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이외에 역내부가가치비율이 FOB 가격으로 40% 미만인 아니거나 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로 인정하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상세한 원산지기준을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품목별로 쌀을 포함한 육류제품과 일부품목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특히 수산물의 경우에도 역내에서 어획된 것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양식의 경우도 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품목별 기준은 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 아웃소싱 추세를 반영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체결하였다.

원산지기준은 FTA 협상과정에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로서 협상당사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매우 중요한 협상의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종합해 볼 때 협정 당사국이 경쟁력을 가질 만한 제품에서는 강력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는 숫자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공식품에서 폭 넓게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비율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향후협정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권 오,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2호, 2005.
- 권 율·정재완·김완중·권경덕, 『한·아세안 원산지규정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05.
- 김경필·어명근·문한필, “FTA 대응 수출시장 확대전략”,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2.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정,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2.3.
- 박현희,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12.
- 방호경,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산업자원부, 『WTO 통일원산지제도 해설』, 2003.
- 성윤갑,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07.5.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의 주요내용』, 2007.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2003.
- 이영달 편저,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1.
- 조명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한국·ASEAN FTA 협정문.
- 한국·EU FTA 협정문.
- 한국·미국 FTA 협정문.
- 한국·칠레 FTA 협정문.
-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1.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www.ecos.bok.or.kr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in Agriculture Sector - Focused on FTA Agreements -

Hyun Hee Park* · Sung Je Cho**

A Certificate of Origin i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t is a printed form, completed by the exporter or its agent and certified by an issuing body, attesting that the goods in a particular export shipment have been wholly produced,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a particular country.

FTA rules of origin in recent FTA agreement is a very complex procedure that requires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he field has become the largest issues. Case of Korea-Chile FTA, starting with the origin criteria for each agreements is inconsistent due to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s an area that is not easy to negotiate.

This study is covered in the agreement signed on the origin criteria for adequate review and comparison by item currently being pursued through the FTA was signed during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has to offer.

Key Words : Rules of Origin, FTA, Rules of Origin in Agriculture

* Hansung University, Professor(hyunhpark@hansung.ac.kr), Main Author

** Cheongju University, Professor(profcho@cju.ac.kr), Corresponding Author